

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-50호

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년 9월 16일

임실군의회 의장인



1. 제정이유

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,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다.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, 실태조사, 놀 권리 보장 사업 등에 관한 규정(안 제4조 ~ 제6조)
- 라.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- 마. 예산지원, 포상 등에 관한 규정(안 제8조 ~ 제9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: 2025년 9월 21일까지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전자우편·직접방문

1) 주 소: (55927)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, 임실군의회(의회사무과)

2) 전 화: 063-640-2883, 팩스 063-640-2699

3) 전자우편: charity81@korea.kr

4. 제정안: 붙임

임실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아동의 놀 권리”란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,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,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
2. 놀이공간 등 놀이기반시설 조성

3.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
 4.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
 5.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 방안
 6.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·단체와의 협력방안
 7.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실태조사)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놀이 권리 보장 사업)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놀이공간 등 놀이기반시설 조성 사업
2. 놀이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
3.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
4.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
5.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심의·자문을 위하여

임실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제4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
 2.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 3.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
 4. 가정, 학교,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
 5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 6.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임실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실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8조(예산지원)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,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, 그 방법 및 절차는 「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포상)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, 단체 등에 「임실군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임실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

□ 아동복지법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□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

제31조

1.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,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,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.
2. 당사국은 문화적·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, 문화, 예술,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.